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678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1. 12.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20가소178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금 부분을 감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겨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변호사인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0486호 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수임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18. 11. 13. '원고는 C로부터 트랙터(차대번호: D)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C에 미지급 과태료와 관리비 등 합계 3,956,9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나71406호로 항소하여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9. 12. 2.자로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C에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반소 제기를 해태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였으며 원고가 전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제1심에서 일방적으로 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수임료 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홀로 진행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제1심보다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0. 24. 피고가 증거제출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트랙터와 관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2621호)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이 사건 소송에서 C은 당초 원고에게 위 트랙터를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용도변경의 근거를 다툼 결과 해당 부분이 청구취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외에 피고는 C의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에 대하여는 권리남용 주장을, 과태료 등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하면 된다는 주장을 각 하였고, 피고가 C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소송의 재판부는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④ 소송당사자는 소송경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소법원의 권고에 따라 일방 또는 쌍방의 양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제1심보다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의 피고의 소송수행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감축 또는 확장되기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해선